제354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2017년9월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2.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3.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1
2.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우원식·김동철·주호영 의원 외 176인 서면동의) ····· 8

(10시1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여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아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묵묵히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 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

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닿을 수가 없는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 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 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그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다시 후대에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 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 경제는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 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지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 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의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 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찼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 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 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고, 중산층을 만들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무려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 공식을 안내해 드릴까요? 생산량은 '지대＋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좌변으로 지대를 옮기면 '생산량－지대'는 '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공식인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을 빼앗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 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당시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 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침체된 한국 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짧았던 여름휴가 중에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도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추미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2.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우원식·김동철·주호영 의원 외 176인 서면동의)

(10시5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세균·우원식·김동철·주호영 의원의 동의와 176인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낭독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낭독하게 될 대북 규탄 결의안이 과정상에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된 대북 규탄 결의안이 너무 약하다, '북한체제의 안정과 발전' 이런 등등의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가 채택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약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이신 우원식 대표, 김동철 대표, 주호영 대표 외 176인이 동의하신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금까지 자행한 다섯 차례의 핵실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서 심각한 도발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마침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 보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무시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김영우 위원장님! 여기 합의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의원 단말기에 올라온 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이 달라요.)

(「얼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수정이 안 된 건가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 의석에서 — 합의문을 누가 전해 준 거예요?)

의장님, 이것 좀 확인……

○의장 정세균 확인하고 오세요.

○김영우 의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의석에서 — 확인하고 하세요. 올라온 합의문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의장 정세균 의원 여러분,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어제 핵실험이 있었고 또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결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교섭단체 간의 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의안을 바꿔 줘야지요, 의안을. 이 의안은 전혀 바뀌지 않고 서로 합의된 안이 있는데, 의안부터 바꾸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김영우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지금 합의된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겁니까? 원래 의장실에서 초안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만들어서

각 당에 회람을 돌렸는데 그것을 아까 국방위원장이 좀 수정을 했잖아요?

(○김영우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수정을 한 게 아니라 다시 여야 간에 수정을 했는데 중간에 잘못 전달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위원장이 낭독하신 내용은 합의한 안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김영우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게 좀 다릅니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합의한 최종안을 전해 받아야 되는데, 의사국에서 전해 받은 것은 합의한 안이 아니고 많이 다른 안을 전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못 전해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서……)

지금 있어요, 합의안은?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

그러면 일단 의원님들이 다 자리에 계시니까 최종 합의한 안을 다시 제안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단말기는 우리 의사국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고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결국 단말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하는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지 마시고, 국방위원장이 제안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하셨던 내용은 속기록에서 제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국방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단말기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약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국방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찬성하시면 찬성으로, 반대하시면 반대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의원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최종 합의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요일의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그 이후에 국회가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 또 교섭단체 간에 그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합의를 추진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더 긴장해서 잘 들으셔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기권 7인으로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오늘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3인)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희	김성식	김수민
김영우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영일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언주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기권 의원(7인)

김세연	송영길	유승민	윤소하
윤종오	주호영	지상욱	

○출석 의원(185인)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동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세연	김수민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혜훈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179인)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세연	김수민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재
이해찬	이혜훈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천정배	최경환(국)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70인)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희	김성식	김세연
김수민	김영우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언주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출장 의원(2인)

권성동 이종배

○청가 의원(6인)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손금주
심상정	이정현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우윤근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	조명균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방부장관	송영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장관직무대리)	최수규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18년도 예산안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국방·행정안전·환경노동)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 2017. 9. 1.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이장우·이종배·이철규·김한표·

염동열·김석기·이진복·권석창·이양수·이헌승·성일종·강석진·김도읍·민경욱·나경원·김성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병욱·김성수·안민석·정춘숙·오영훈·이찬열·조승래·윤후덕·김민기·유은혜·소병훈 의원 발의)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병욱·안민석·조승래·권미혁·박찬대·오영훈·유승희·정성호·정춘숙·임종성·노웅래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조경태·정병국·최연혜·고용진·박준영·이헌승·황주홍·문진국·최교일·박성중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정춘숙·강훈식·표창원·기동민·소병훈·민홍철·추미애·정성호·김영호·윤관석·오제세·김병욱·신창현·송옥주·박재호·이철희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종회·김현권·김수민·유성엽·주승용·이동섭·김철민·정운천·황주홍·정인화·윤영일·박준영·정동영·장정숙·김중로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종성·조승래·이춘석·남인순·강훈식·정춘숙·기동민·이인영·안규백·이찬열·윤관석·문희상·김정우·김해영·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종회·김수민·주승용·이동섭·신용현·김관영·김철민·윤영일·박준영·장정숙·김중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종회·유성엽·이동섭·신용현·정동영·김관영·김철민·정운천·황주홍·조배숙·정인화·윤영일·박준영·장정숙·김중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주승용·최도자·조배숙·윤영일·김경진·박주현·강창일·이동섭·김중로·김해영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

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관영·주승용·신용현·조배숙·황주홍·최도자·이동섭·오세정·김종회·최명길·김삼화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경미·안민석·조승래·김영호·임종성·김태년·김병욱·유은혜·박홍근·손혜원·이정미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권미혁·정춘숙·채이배·홍의락·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경미·윤소하·김종민·안규백·신창현·소병훈·문진국·신용현·김정우·손혜원·윤관석·박재호·원혜영·제윤경·김현권·노웅래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인재근·김병욱·김정우·윤관석·이철희·박재호·이재정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인재근·김병욱·김정우·이철희·박재호·이재정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인재근·김병욱·김정우·윤관석·이철희·박재호·이재정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정갑윤·김성태·강석호·박맹우·성일종·김종석·김석기·金成泰·김규환·권성동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종성·윤관석·전현희·조정식·소병훈·이찬열·김철민·김병욱·박정·이인영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종성·이찬열·이원욱·김철민·김병욱·김성수·박정·박주민·송석준·이인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남춘·이재정·김두관·진선미·이훈·김현권·유은혜·윤종오·김정우·전해철·서영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관영·주승용·신용현·조배숙·황주홍·최도자·오세정·김종회·최명길·김삼화·박주현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정·임종성·김철민·소병훈·김현권·박찬대·원혜영·위성곤·홍의락·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인재근·김병욱·김정우·윤관석·이철희·박재호·이재정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조정식·이원욱·김영진·김영호·박정·김현아·홍의락·김정우·황희·임종성·윤영일·최인호·안호영·윤관석·민홍철·전현희·안규백·박찬우·이학재 의원 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이학영·최인호·윤영일·이원욱·이춘석·남인순·정춘숙·윤호중·이재정·박광온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관영·주승용·신용현·조배숙·황주홍·최도자·이동섭·오세정·김종회·최명길·김삼화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윤재옥·송희경·문진국·하태경·이철우·박찬우·김정재·곽대훈·김석기·정태옥·유민봉 의원 발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해영·윤호중·이재정·박홍근·추혜선·남인순·이찬열·이춘석·박광온·안규백·최인호·양승조 의원 발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정·임종성·김철민·소병훈·김현권·김정우·원혜영·위성곤·홍의락·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정·임종성·김철민·소병훈·

원혜영·위성곤·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안규백·전현희·최인호·박홍근·민홍철·윤관석·정성호·이춘석·이원욱·안호영·박찬우·윤호중·백재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강창일·정재호·오영훈·주승용·황주홍·장정숙·신용현·김정우·위성곤·이종걸 의원 발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함진규·임이자·이현재·주호영·주광덕·이완영·이우현·신상진·홍문종·한선교 의원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어기구·송기헌·문희상·유승희·이용득·위성곤·신창현·유동수·조승래·제윤경·민병두·표창원·김종민·김경협·최운열·소병훈 의원 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백재현·홍영표·김해영·김영호·김현권·안호영·정춘숙·서영교·조승래·이재정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백재현·홍영표·김해영·김영호·김현권·안호영·정춘숙·서영교·조승래·이재정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16건 2017. 9. 1. 정부 제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11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017. 9. 4. 정세균·우원식·김동철·주호영 의원 외 176인 서면동의)

○심사기간 지정

2018년도 예산안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정보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8년도 예산안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국방·행정안전·환경노동)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2건 2017. 9. 1.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2017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차보고서
(2017. 9. 1. 정부 제출)
9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17. 9. 1. 금융위원회 제출)
9월 4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7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이상 2건 2017. 9. 1. 정부 제출)